

2025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여성특화 창업기획자』 모집 공고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창업기획자) 모집 공고문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벤처·스타트업 모집은 '25년 4월초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모집) 예정입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양성하여 초기 여성 스타트업 성장지원 기회 확대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 사업규모 : 4개 운영기관(기관당 창업기업 7~9개사 이상 발굴·육성)
- 비수도권 창업기획자 1개사 이상 선정 예정
- 사업예산 : 7억원(기관당 1.5억원~2억원 차등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2. 31
- 지원내용 : 초기 여성 스타트업(7년 미만) 발굴·보육, 투자지원 등

□ 운영기관 역할

구분	주요내용	재원
직접(초기)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직접투자 지원 *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창업기업 3개사 이상에 협약기간내(~'25.11.30)직접투자 * 운영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중인 타 운영기관의 창업기업 대상 투자 가능 (단, 본 사업에 참여중인 창업기업에 한하며 운영기관 별 최대 1개사까지만 직접투자 가능) 	자체 재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평가·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에서 보유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선정 * 운영기관은 창의성과 시장 경쟁력이 반영된 혁신기술 기반 유망 여성 스타트업 적극 발굴 노력 * 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 발굴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u>비수도권 운영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 주소지가 비수도권인(서울,경기,인천 제외) 창업기업에 한하여 선발(지원) 가능</u> 	정부지원금 + 대응자금 (현금)
맞춤형 특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의 역량을 투입하여 유망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맞춤형 멘토링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창업기업의 업종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운영 ○ (보육)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입주, 협업, 강의장) 등 지원 *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과 협력 가능 	
사업화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당 최소 9백만원~최대 1천만원 사업화자금(현금) 배정 및 지원·관리 필수 *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마케팅, 지재권 등에 활용되는 사업화자금 집행 및 관리 * 운영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가능 	
후속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모데이 개최 등 후속 투자유치 연계 지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의 국·내외 시장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자, 고객, 파트너사, 졸업기업, 스타트업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상호협력 등 후속지원 ○ 대중매체 등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사업 및 창업기업 홍보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매출액, 고용,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 위의 지원내용 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보육 등)은 운영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등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및 운영 가능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서 아래의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을 갖추어야 함

구분	주요내용
총괄책임자	○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 창업 및 액셀러레이팅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 우대
참여인력	○ 총괄책임자(겸직가능) 외 1명 이상의 전담인력 * 전담인력 중 창업(지원)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구성
멘토단 확보	○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전문분야 멘토 확보 및 기업이 추가적인 멘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확보
협력체계	○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보유

□ 신청요건

- 매칭투자자금(자체재원) 구성 : 운영기관은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당해년도 창업기업 협약기간(~25.11.30) 내 창업기업 3개사 이상 직접투자
 - * 내·외부 투자금 등 투입 시, 약약서를 미제출하거나 **본 사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투자 기업수, 투자금액 등) 명시가 안 될 경우 **불인정**
 - 운영기관이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용 투자재원**을 **운용**하는 경우 인정

※ 운영기관은 사업제안 시 협약기간 내 직접투자 기업수 및 투자액 등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하며, 미이행시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직접(초기) 투자금을 미투자 또는 투자된 초기창업기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투자액으로는 불인정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 대응자금 투입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투입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사용 가능
 - *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약약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 대응자금 확보 예정인 경우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확보시 운영기관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현물지원 : 입주 공간, S/W, H/W 등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⑥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내용 및 사업비 구성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선정·관리,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비 등 사업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사업비 구성(안)

구 분	세부 내용	비율
인건비	전담인력 인건비 및 겸직인력 수당	총 사업비의 40% 이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모집·선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운영	총 사업비의 60% 이상
사업화 자금지원	선정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현금) 지원 (기업당 최소 900만원 ~ 최대 1천만원)	
사업운영비	일반수용비(소모품비, 홍보비, 회계감사비, 기타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국내·외 여비, 기관업무비(총액의 2% 이하)	-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운영기관+창업기업) 정산

** 인건비 책정시 본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인력으로 구성하여 제시해야 하며,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선정 평가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사업제한 등 제재사항이 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5. 2. 28(금) ~ 3. 17(월)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sjheo@kovwa.or.kr) 제출

○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방식
3.17(월) 까지	① 제출공문(기관대표자 명의, 자유양식)	이메일 (sjheo@kovwa.or.kr)
	② 사업계획서	
	③ 기타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투자실적증명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각 1부	
	④ 발표자료(PDF) * 영상, 사운드 재생 불가 **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예정)	

* 파일명 : (기관명)_여성특화 액셀러레이터_(제출서류명칭)

** 폴더명 : (기관명)_여성특화 액셀러레이터

○ 문의처 : 기업지원본부 sjheo@kovwa.or.kr / 02-3440-7469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 운영기관 선정평가 운영 절차 >



*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25. 3. 19(수) - 20(목) 진행예정
 - * 신청기관별 평가일정 및 시간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평가장소는 한국여성벤처협회(서울 강남구 역삼) 인근 평가장에 진행
- **평가방식** : 신청기관당 25분(발표 10분 + 질의 15분) 대면 발표평가 실시
 - * 발표자는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만 가능하며, 평가장 내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명으로 제한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 기관역량 및 사업수행 등 세부항목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관역량	○ 기관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 추진실적 및 투자성과(투자금액, 후속투자연계율 등)	15
	○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현황	5
사업수행 역량	○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사업화지원, 역량강화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네트워크, 사후관리 등)	30
투자계획	○ 운영기관 직접(초기) 및 후속투자 계획	20
성과관리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 성과달성 방안 등(직접투자 / 후속투자 사업홍보 MOU 지원기업 고용 창출 / 매출액 증가 등)	10
소 계		100
가 점	○ 직접투자 자체재원 조성(3점) * 2억원 1점, 2.5억원 2점, 3억원 이상 3점 ○ 대응자금(현금) 20% 이상 조성(2점) ○ 신청기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1점)	6
합 계		106

- *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 ** 평가위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선정기관의 중도협약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기관 순서대로 선정
- ****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기관의 정보보안 및 형평성 등으로 인해 선정결과는 공개하지 않음(개별 안내 예정)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PDF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발표자료는 수정 불가(영상, 사운드 재생 불가)
 - * 발표자료 작성 시, 보유 인프라 현황 확인을 위해 관련 사진 등을 상세하게 첨부요망(선정기업 중 필요시 현장실사 예정)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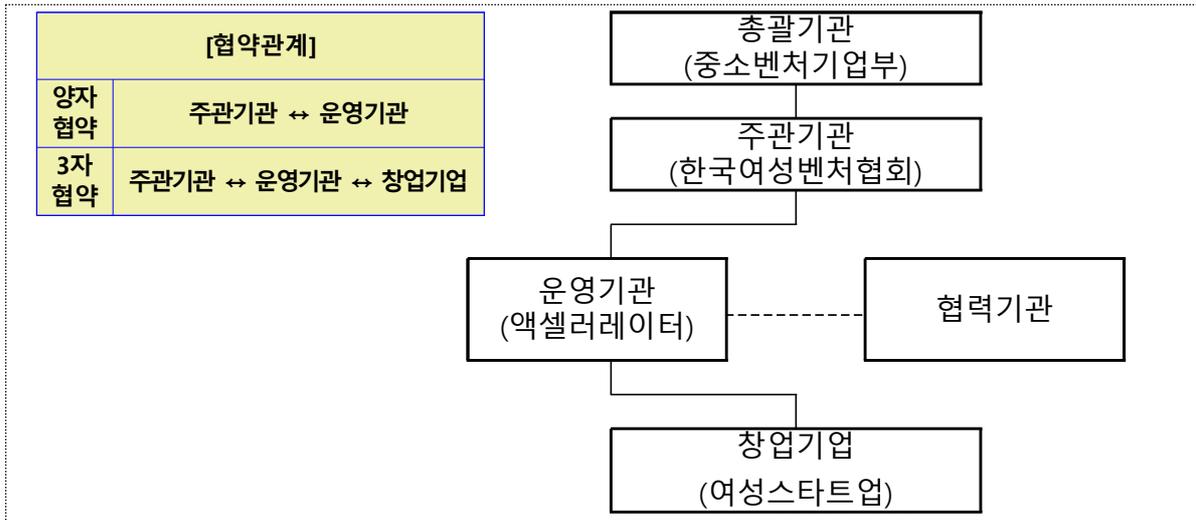
-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관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기업 및 신청기관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청절차 및 서류 제출은 정해진 신청·접수 기한(25.3.17(월))까지 완료되어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하며, 비목 내 대응자금이 책정되어 있을 경우 대응자금 선 집행 후 정부지원금 집행이 가능함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4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동 사업에 선정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 (컨소시엄의 장은 신청 불가)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자재원 등 자금 확보 등의 신청요건은 협약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기타 사안(전년도 확약사항 미이행 등)으로 개최된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등 발생 시 중도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중도 해약 발생시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운영기관 선정
- 신청(운영)기관은 타 기관과 협업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협약은 주관기관(협회)와 신청(운영)기관(1개 기관) 간 진행
 - * 모든 사업비(대응자금 포함)는 신청(운영)기관에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 협업기관은 단독으로 운영기관 기능을 수행하거나 "본 사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협약기간 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인정(환수)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구비가 미비한 경우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협약체결** :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시, 타 기관 협업할 수 있으나 협약은 주관기관(협회)과 운영기관(1개 기관)이 진행



- **이행준수** : 협약 후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지될 수 있음

< 협약사항 (운영기관 역할) >

- ①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진행)
- ② 최종 선정된 기업의 사업단계에 맞춘 세부달성 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
- ③ 기업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④ 기업에 직접 또는 후속투자 지원
- ⑤ 기업의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관리

- **현장실사** : 선정기관은 협약 전 사업수행 준비, 사업수행 가능여부 판단, 민간부담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 추진

* 제출된 계획서와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할 경우 협약 체결 취소 가능

- **성과평가** : 매년 사업성과 평가 실시(일자리 창출실적 등)

-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시행

- **최종결과보고** : 본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 일체에 대한 증빙 등 제출 필수

* 스타트업 선발, 투자지원, 프로그램 세부진행,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등

- 자료제출 의무 : 선정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 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4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8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